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91호
-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
-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2006년 7월에 제정되어 현재 까지 서울시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 다만,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명기된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외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함으로써 서울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위법으로 명시하여 서울시 문화정책에 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06년에 제정된 동 조례는 서울시의 문화예술환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2021년부터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2개 법률을 상위법으로 명기하고 있음.
- 다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동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아 법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서울지역의 문화 역시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¹⁾,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겠음.

1)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다. 조례 목적의 추가(안 제1조)

- 현행 조례가 제1조에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각 법의 시행령을 상위법령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동 개정안은 시행령을 삭제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 -----.

- 먼저, 시행령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시행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제정한 법규명령으로, 조례상 명기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됨.
- 따라서 법률을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시행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효력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인 효율을 위하여 시행령을 조례에 명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임.

- 다음은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면서 각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명기한 3개 법률의 목적을 각각 살필 필요가 있음.
- 첫째,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둘째,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셋째,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3개의 법률은 각각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을 통해 문화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또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문화 관련 각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이자 지원자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서울지역 문화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의안번호
259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2025.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상위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명시하여 서울의 고유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주요 입법 요지〉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추가(안 제1조)				
추진경과	○ '25. 3. 3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조(목적)에 상위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명시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산 보존 관리, 서울의 문화도시 구현 등 우리시 지역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동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명시하여 향후 서울만의 고유한 지역문화 발전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함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팀장	이남재(☎2133-2512)	담당	김근형(☎2133-2516)